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1168

제안연월일: 2014. 7. .

제 안 자:정무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가. 2013년 5월 6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을 2013년 11월 8일에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.
- 나. 2013년 5월 23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을 제316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정무위원회(2013. 6. 18.)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.
- 다. 2014년 1월 20일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을 제322회 국회(임시회) 제4차 정무위원회(2014. 2. 20.)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.
- 라. 2014년 2월 5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을 제322회 국회(임시회) 제4차 정무위원회(2014. 2. 20.)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.

- 마. 2014년 2월 19일 인재근의원, 2014년 3월 17일 김기준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2014년 4월 1일에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직접 회부하였음.
- 바. 제324회 국회(임시회)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14. 4. 30.)에서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- 사. 제32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정무위원회(2014. 5. 1.)는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,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,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

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

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,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이체 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,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함(안 제13조제2항 신설).
- 나.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학(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).
- 다. 총자산,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(안 제 21조의2제3항 신설).
- 라.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(신용정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름)하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).

- 마.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 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40조제6항 신설).
- 바.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·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(안 제46조제1항 신설).
- 사.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업 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(안 제49조제1항).
- 아.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(안 제51조제1항).

4. 부대의견

금융위원회는 고객정보의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객정보 보호업무를 위한 내부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법률 제 호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제13조"를 "제1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"를 "정보기술부문, 전자금융업무 및 「전자서명법」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"으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,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총자산,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

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21조의2제4항(종전의 제3항)제1호 중 "전자금융거래"를 "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보호 및 관리"를 "보호"로 한다.

- 제22조의 제목 중 "생성 및 보존"을 "생성·보존 및 파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기록"을 "기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금융거래기록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"을 "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, 보존방법, 파기절차·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"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2.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

제28조제4항 중 "제46조 및"을 "제46조, 제46조의2 및"으로 한다.

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2조제1항 중 "계리"를 "회계처리"로 한다.

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"하나"를 "하나(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및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의 규정"을 각각 "제1항 또는 제2항"으로 한다.
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.

제49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

- 된 데이터를 조작·파괴·은닉 또는 유출한 자
- 2.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,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
- 3.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,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 생시킨 자
- 4.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(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 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
- 제49조제2항(종전의 제1항)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⑥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 은 처벌한다.
- 제50조제1항 중 "제49조제1항, 제2항(「형법」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3항"을 "제49조제1항, 제2항, 제3항 (「형법」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4 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49조제2항"을 "제49조제3항"으로 한다.
-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- 2.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호의"를 "제3호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,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 - 1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
 - 4.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
 - 5.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(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기간을 연 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지급의 효력발생시기)	제13조(지급의 효력발생시기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
	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
	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
	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
	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
	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
	하여야 한다.
제14조(거래지시의 철회) ① 이용	제14조(거래지시의 철회) ①
자는 <u>제13조</u> 각 호의 규정에	<u>제13조제1항</u>
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	
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	
있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안전성의 확보의무) ① (생	제21조(안전성의 확보의무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	②
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	
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	
위한 인력, 시설, 전기적 장치,	
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	<u>정보기술부문,</u>

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하여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8 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 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지정) ①・② (생 략) <신<u>설></u>

-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다.
-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
- 2.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3. ~ 5. (생 략)

전자금융업무 및 「전자서명법」 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 법----.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|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, 보안기술과 인증기술 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제21조의2(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> ③ 총자산, 종업원 수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 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 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 무를 겸직할 수 없다.

<u>4</u>)	-	 								_	-	_	_	-	-	-	-	-		-	_	-
			 _	_	_	_	_	_	_	-				_	_	_	_	_	_	_	_	_	-

- 1.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1.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 융거래-----
 - 2. 정보기술부문의 보호
 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략)

제2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저 및 보존)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 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·검색하 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신 설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 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베2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<u>생성</u>
· 보존 및 파기) ①
<u>기록(이하 이 조에서</u>
"전자금융거래기록"이라 한다)
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
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
고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가 종
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
자금융거래기록(「신용정보의
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. 이
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파기하여
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
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- 2.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 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----------전자금

<u>종류 및 보존방법은</u>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 록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 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, 제2장(제19조는 제외한 다) 및 제3장(제21조제4항, 제21 조의2, 제21조의3, 제23조 및 제 25조는 제외한다), 제37조, 제38 조. 제39조제1항·제6항, 제41조 제1항, 제43조제2항·제3항, 제46 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소 속 임직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 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, 제39 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 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

⑤ (생략)

제40조(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) ① ~ ⑤ (생 략)

<u>융거래기독의 종뉴, 보존방법,</u>
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
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
세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
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제46조,</u>
제46조의2 및
⑤ (현행과 같음)
세40조(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
및 검사) ① ~ ⑤ (현행과 같

<신 설>

⑥ (생략)

제42조(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 영지도) ① 금융기관 및 전자 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 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 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 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<u>계리</u> 하고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 제46조(과징금) <신 설> 음)

⑥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 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 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 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세42조(회계처리	구분	및	건전경
영지도) ①			
			· <u>회계</u>
<u>처리</u>			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과징금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
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<u>하나</u>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 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금융위원회는 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<u>④</u> (생 략) 제49조(벌칙) <신 설>

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
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
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
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
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
을 부과할 수 있다.
<u>②</u>
<u>하나(제1항에 따라 과</u>
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
<u>다)</u>
③ 제1항 또는 제2항
<u>④제1항 또는 제2항</u>
.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4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

<u>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</u>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 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・파 괴・은닉 또는 유출한 자
- 2.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, 논리폭탄 또는 메일 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
- 3.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,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 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 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
- 4.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(제28조제4항 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를 포함한다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
<u>(2)</u>	 	 	 	 	_
	 	 	 	 	_
	 	 	 	 	_

다.

- 1. ~ 5. (생 략)
- 6.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
- ② (생략)
- ③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, 누설하거나,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(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·⑤ (생략)
- ⑥ 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⑦ (생략)

제50조(양벌규정) ①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, 제2항(「형법」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_____

1. ~ 5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<삭 제>
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
 와 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
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 - ⑦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양벌규정) ① -----

제49조제1항, 제2항, 제3항(「형 법」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 4항-----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2항 (「형법」 제214조,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다.

제51조(과태료) ① 제36조를 위반 저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

,
②
<u>제49조제3항</u>
<u>.</u>
에51조(과태료) <u>① 다음 각 호의</u>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

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2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 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1. · 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 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- 2.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

②
<u>제3호의</u>

- 1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

 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
- <u>2.</u> · <u>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4.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<u>자</u>
- 5.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

	에게 재위탁을 한 자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